

제245회 정례회
2005.12.16(금)

검 토 보 고 서

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
세입·세출추가경정예산(안)

교 육 사 회 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.
- 2005년 12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**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**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총 예산규모는 1조 2,327억 9,22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.9%인 116억 7,125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.
-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보고 드리면,
 -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7억 4,618만 3천원(0.9%)이 증액된 1조 372억 4,797만 5천원,
 -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87억 2,808만 5천원(19.8%)이 증액된 1,131억 9,899만 8천원,
 - 자체수입은 398억 9,789만 3천원($\Delta 42.0\%$)이 감액된 550억 7,754만 3천원,
 - 지방교육채는 265억 1,54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

- 주민 등 부담수입 및 기타는 7억 5,236만 7천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.
- 재원별 세부내역은 특별교부금 86억 1,581만 7천원, 국고보조금 1억 3,036만 6천원, 일반회계부담수입 187억 2,808만 5천원,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7억 5,23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, 자체수입은 398억 9,789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.
-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,
 -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94억 6,321만 2천원($\triangle 2.3\%$)이 감액된 8,250억 8,428만 2천원,
 - 경상비는 74억 2,606만원($\triangle 5.8\%$)이 감액된 1,211억 6,656만원,
 - 사업비는 22억 5,584만 5천원(0.9%)이 증액된 2,544억 416만 7천원,
 - 예비비 및 기타는 129억 6,216만 9천원(162.4%)이 증액된 209억 4,254만 7천원
 - 채무상환은 111억 9,47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.

○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

- 유아교육지원	18억 921만원
- 특수교육지원	16억 4,500만원
- 체육활동지원	2억 8,479만 4천원
- 교육활동지원	40억 6,060만원
- 교육환경개선 시설	22억 6,660만원
- 사유지 매입	19억 9,850만 2천원

등이 편성 되었습니다.

○ 예산총칙 제10조에 『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목적지정 지원금이
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
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』를 추가 규정 하였으며

○ 명시이월사업으로 진천고농촌우수고지원사업외 38개의 사업
300억 6,7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.

□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
추가경정예산안은,

- 국가부담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지원액 변경과
자체수입인 재산수입과 이월금의 증감에 따라 편성되었으나

○ 세입분야에서

- 주요사업설명자료 p 3 자체수입의 이월금 426억 8,015만 2천원이 대폭 감액한 사유와
- p 30 재산매각수입 19억 7,144만 4천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
- p 34 잡수입의 제천교육청 변상금 314만원과 재해복구 공제 회비 5억 4,004만 6천원에 대한 내역
- p 35 주민 부담금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수입 4억 2,257만 3천원을 당초예산이 아닌 3회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

○ 세출분야에서

- p 97 학교신설사업에서 경덕고, 원평고의 학교신설취소 사유 및 기 확보된 사업비를 타 학교로의 지원기준 및 내역
- P 101 농촌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에서 사업기간을 2007년 2월까지로 정하여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
- p 107 사유지 매입에서 본청, (구)양화초등의 토지매입 필요성
- p 111 제천청암학교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의 사업내역과 법인부담금 3억 2,000원의 부담여부

- p 116 운동부 휴게시설 확충에서 충주예성여중의 운동부 휴게 시설비 3억 182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

- 명시이월사업 중

- p 59 교육박물관 운영의 관서운영비 2,000만원과 업무추진비 492만원을 명시이월 사유와

- p 61 옥천초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월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

- 그리고 예산총칙 제10조의 간주처리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2호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예상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